

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15조에 의거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외국인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2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. 다만 국내거주 대만 화교학생은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의 국적이 한국인일 경우에도 인정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복수 국적자는 내국인으로 본다.

제3조(모집학과) 모집 학과는 대학원 학칙 제5조〔별표1〕의 각 학위과정 전 학과로 한다.

제4조(지원자격)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외국인 학생의 특례 입학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

- 가. 국내·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
2. 박사학위과정

- 가. 국내·외 정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
제5조(모집 시기) 외국인 학생의 모집은 정시와 수시로 한다.

제6조(제출서류)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지원구비서류

- 가. 입학지원서(소정 양식-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×4cm 상반신 사진 3매 부착) 1부
 - 나. 출신대학 교수추천서(소정 양식) 2부
 - 다. 자기소개서 1부
 - 라. 대학졸업(예정)증명서 1부〔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(예정)증명서 각 1부〕
 - 마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〔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(전학년)성적증명서 각 1부〕
 - 바.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(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인 경우에 한함) 1부
 - 사. 본인 및 보호자(부, 모)의 외국인 증명서 각 1부
 - 아.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(최근 1개월 이상 계속예치) 1부
- ### 2. 합격 후 제출서류
- 가. 본인 호적등본(한국계 외국인에 한함) 1부
 - 나. 본인 여권 사본 1부(반드시 본 대학원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)
 - 다.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(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) 1부
 - 라. 학위기 사본 1부(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학위기 사본)

마. 졸업증명서 1부(졸업 예정자에 한함)

바.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전형방법) ① 서류전형 및 구술고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. 다만, 입국사정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할 지원하는 경우 서류전형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선발하고, 구술고사 후 최종 선발한다.

② 예능계는 서류전형과 구술고사로 하되, 경우에 따라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생)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36조의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, 그 입학 절차는 외국인 학생의 일반학위과정 입학 절차에 따른다.

제9조(장학혜택) 학업성적이 특별히 우수하고,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의결을 거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국제학술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 능력이 미흡한 사람은 본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, 「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」 및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특례입학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의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.